

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대상자는 중증장애인단기거주시설 건립 후원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구미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, 기여함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예우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3조 규정에 따라 석성일만 사랑회 조용근 회장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- 명예시민증 수여 : '22. 11. 11.(금) 10:30 사랑의쉼터* 준공식

* 사랑의쉼터 : 장애인단기거주시설(도개면 소개, 舊 동산초등학교)

3. 소요예산 : 해당없음

4. 관계법령

- 「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3조

5. 내 용

○ 수여 대상자 인적사항

- 성 명 : 조용근(48년생)
- 학 력 : 성균관대 상학과 명예졸업
- 이 력
 - 現) 세무법인 석성대표,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이사장,
사)석성일만사랑회** 이사장
 - 前) 대전지방국세청장, 한국세무사회회장, 천안함재단초대이사장

** 석성일만사랑회

- (설립취지) 매달 1만원을 아껴서 1만명이 기부
- (소 재 지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
- (회 원) 600여 명(국세공무원, 세무사, 회사원 등)
- (주요사업)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건립 지원 등

- 수상경력
 - '19. 12. 02. 대한민국 나눔과배려복지대상(복지TV)
 - '21. 11. 18. 대한민국 위대한국민대상(한국바른언론인협회)

○ 공적사항

-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건립 후원 : 408백만원
 - 여자(1차, '20) 남자(2차,'21) 생활관 신축비 : 각 200백만원
 - 물품지원 : 8백만원

※ 위 시설은 학교부지를 무상사용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의 거주 환경과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중에 석성일만사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생활관 개선 사업에 부합하여 생활관 2개소를 건립 후원함.(전국 7개소 중 구미시 2개소 후원)

- 주요 사회공헌 활동 내역
 - 중증장애인생활관 7개소(6개 지역, 12억원) 건립 후원
 - ※ 1호('14) 충남 논산, 2호('16) 경기 용인, 3호('17) 서울 서초, 4호('19) 경기 수원, 5호('20) 경북 구미, 6호('21) 강원 양양, 7호('22) 경북 구미
 - 세무법인 석성 매출액 1% 장학기금 후원('05. ~)
 - '08. 미얀마 양곤시 학교 건립, '10. 캄보디아 무료급식소 건립 등

○ 수여의 필요성

- 거주시설 건립 후원에 대한 예우
- 명예시민증을 통한 구미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
- 향후 장애인 시설 환경 개선 등 지역 후원 연계 필요 시 협의를 통한 복지 증진 이바지 기대

○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(안) ※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및 시행규칙

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○ ○ ○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귀하를 구미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. 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 미 시 장 ○ ○ ○ (관인)	제 호 명 예 시 민 증 ○ ○ ○ 사 진 상기인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구미시장 ○ ○ ○ 관인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

제2조(수여대상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·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에게 구미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대외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
2. 문화예술·체육·과학기술·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
4.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3조(수여대상자 결정)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시정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친 후, 구미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한다.

제4조(예우)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구미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
2.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
3. 구미시 주관행사 초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제5조(사후관리)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명예시민증의 취소)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,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.

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

1. 재정수반요인

- 미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해당없음

4. 재원조달 방안

- 해당없음

5. 부대의견

- 해당없음

6. 작성자

- 총무과 총무계 (480-6753)

소관부서		총무과
입 안 자	과 장	박노돈
	담 당	조용경
	담 당 자	이수빈 (480-6753)